

구미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구 미 시

구미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 . . .
제 출 자 : 구 미 시 장

1. 제안이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설되는 구미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도모하여 가축분뇨 처리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구미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나. 공공처리시설로 유입되는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제5조, 제7조, 제8조)

다. 수집·운반 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 사용료, 공공하수처리시설

사용료 납부 등에 관한 사항(안 제9조~제11조)

3. 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6조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붙임

다. 합 의 : 감사담당관, 기획예산과와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구미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미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란 소·돼지·말·닭 그 밖에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사육동물을 말한다.
2. “가축분뇨”란 가축이 배설하는 분(糞)·요(尿) 및 가축사육과정에서 사용된 물 등이 분·요에 섞인 것을 말한다.
3. “배출시설”이란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가축분뇨가 발생하는 시설 및 장소 등으로서 축사·운동장 그 밖에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축산농가”란 구미시(이하 “시”라 한다)가축을 사육하는 농가를 말한다.
5. “구미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이하 “공공처리시설”이라 한다)이란 가축분뇨를 자원화 또는 정화하기 위해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6. “저장시설”이란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배출되는 가축분뇨를 저장하는 시설을 말한다.

7. “공공하수처리시설”이란 하수를 처리하여 하천·바다 그 밖의 공유수면에 방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처리시설과 이를 보완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관리 및 운영) ① 공공처리시설의 관리·운영은 시장이 한다. 다만, 공공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공공처리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공공처리시설의 수탁운영자는 가축분뇨의 반입실적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매월 5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단서에 따른 위탁의 기준·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미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 따른다.

제4조(수집·운반 대상 및 지역) ① 가축분뇨 수거대상 지역은 구미시 전역으로 한다.

②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가축분뇨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다른 배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규모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다.

1. 배출시설의 비정상적인 운영 등으로 인하여 시장이 일정기간 동안 공공처리시설로의 유입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공공처리시설의 처리용량에 여유가 있는 경우

제5조(가축분뇨의 반입 등 제외)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리시설로 반입을 거부, 반송 및 처리대상 배출시설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축산농가가 가축분뇨를 고액분리하지 아니한 경우
2. 수거업자가 임의대로 수거한 가축분뇨를 처리시설로 유입하려고 할 경우
3. 별표 1에서 정하는 설계농도 이상의 고농도 가축분뇨

제6조(가축분뇨 저장시설의 설치) ①시장은 가축분뇨의 효율적인 수집·운반을 위하여 축산농가에 저장시설 및 분리시설을 설치하게 할 수 있으며, 축산농가에서는 이에 적극적으로 응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축산농가가 저장시설 및 분뇨 분리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처리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수집·운반 및 처리를 거부할 수 있다.

제7조(수집·운반) ① 시장은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에 대하여 지역 또는 농가별로 일정을 정하여 가축분뇨를 수집·운반할 수 있다.

② 환경오염으로 인한 긴급상황이 발생하여 수집·운반을 요청하는 민원이 있을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민원을 우선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제8조(수집·운반 대행) ① 시장은 가축분뇨의 수집·운반과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법 제28조에 따라 가축분뇨관련영업 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집·운반을 대행하고자 하는 자는 가축분뇨 수집·운반에 관하여 시장과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수거구역, 수거량 및 업체의 경제성을 감안하여 가축분뇨의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수를 조정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대행계약을 함에 있어 수거구역을 지정하는 등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으며, 대행계약을 체결한 대행업자는 가축분뇨의 수집·운반 실적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매월 5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수집·운반 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 사용료 등) ① 가축분뇨의 수집·운반 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는 별표 2와 같으며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연계처리 사용료를 포함한다.

② 가축분뇨 수집·운반을 대행시킨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수집·운반 수수료 및 처리시설 사용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수집·운반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을 당하여 재력을 상실한 자
2. 전염병이 확산되어 가축분뇨의 긴급한 처리가 필요한 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 제3항에 따라 수집·운반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주소, 성명, 가축분뇨량에 대한 읍·면·동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⑤ 시장은 대행업자가 제3항에 따라 수집·운반수수료를 감면하고자 할 경우에는 감면하는 수집·운반 수수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대행업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⑥ 공공하수처리시설 연계처리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사용료는 「구미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라 분뇨수집·운반 수수료 및 처리장 사용료 규정에 준용하여 납부한다.

제10조(공공처리시설 사용료의 징수방법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수집한 가축분뇨를 처리하기 위하여 공공처리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는 공공처리시설의 관리·운영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1. 가축분뇨의 수집·운반 대행업자

2. 그 밖에 시장이 공공처리시설을 이용하도록 인정한 자

② 공공처리시설 관리·운영자는 공공처리시설에 가축분뇨를 반입할 때마다 그 물량을 확인하여 대장을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 공공처리시설 이용자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제반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공처리시설 관리·운영자는 사용을 중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제11조(징수교부금 교부) 제10조제1항에 따라 대행업자가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를 징수하여 시장에게 납부한 경우에는 징수금액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징수교부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12조(지도·감독) 시장은 수집·운반 대행업자 및 공공처리시설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수집·운반 대행업자 및 공공처리시설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계약 요건의 구비실태 사항

2. 수집·운반·처리의 적정성 여부

3. 그 밖에 수집·운반·처리 업무의 전반에 관한 사항

제13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수수료·사용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규정한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

를」에 따라 징수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부터 제11조
까지의 제정규정은 202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유입수 설계농도 기준(제5조 관련)

(단위 : mg/ℓ)

	BOD	COD	SS	T-N	T-P	비 고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30,000	18,000	25,000	6,000	900	

[별표 2]

가축분뇨 수집·운반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 사용료(제9조 관련)

시 설 별	부과기준	계	수집·운반 수수료	공공처리시설 사용료
허가대상	1ℓ	53원	8원	45원
신고대상	1ℓ	48원	8원	40원
신고미만	1ℓ	38원	8원	30원

가축분뇨 반입일지(제3조제3항 관련)

년월일	대행업체명	차량번호	운반자	수집농가수	수량(kℓ)	사용료(원)	비고
계							

가축분뇨 수집·운반 실적(제8조제4항 관련)

대행업체명 :

이
지

[illegible]

관계법령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공공처리시설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농협조합은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공공처리시설(농협조합의 경우에는 자원화시설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농협조합이 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공공의 목적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농협조합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 ⑦ 생략

제25조(공공처리시설의 운영 등) ① ~ ② 생략

③ 공공처리시설설치자 또는 공공처리시설의 관리를 대행하는 제28조 제1항제3호의 가축분뇨시설관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공공처리시설설치자등"이라 한다)는 공공처리시설에서 가축분뇨를 처리할 때에는 규모가 작은 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우선적으로 반입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④ 공공처리시설설치자등은 공공처리시설의 처리용량에 여유가 있을 때에는 관할구역의 분뇨를 공공처리시설로 유입시켜 처리할 수 있다.

⑤ ~ ⑫ 생략

제26조(가축분뇨의 수집·운반·처리 및 비용 부담 등) ① 공공처리 시설설치자는 가축분뇨를 직접 수집·운반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8조제1항제1호의 가축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수집·운반업자"라 한다)로 하여금 그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하거나 축산업자로 하여금 스스로 운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농협조합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 농협조합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 ④ 생략

⑤ 공공처리시설설치자는 가축분뇨를 수집·운반 또는 처리할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되는 가축분뇨를 배출하는 자로부터 해당 시설의 운영에 드는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배출시설의 규모, 가축분뇨의 분리저장 여부 등에 따라 그 비용을 차등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⑥ ~ ⑦ 생략

□ 「구미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7조(분뇨의 수집·운반 수수료·사용료 등의 부과·징수) ① 시장은 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수집·운반된 분뇨 및 그 밖의 침출수의 처리를 위한 처리수수료(이하 "처리수수료"라 한다)는 별표 6과 같다. 다만, 무게로 계량하는 경우에는 별표 7의 반입분뇨의 부피량 환산방식에 의한다.

② ~ ③ 생략

[별표6] 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 산정기준(제27조제1항 관련)

1. 분뇨수집·운반수수료 및 처리장 사용료

[단위 : 원]

용량	2013년 8월분부터			2014년 8월분부터			비고
	계	수수료	사용료	계	수수료	사용료	10원 미만의 수수료는 버린다.
18ℓ	226	208	18	236	218	18	

2. 생략

제28조(처리장 사용료 납부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매월 2회 처리장 사용료 납부 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하며, 납부의무자는 매월 15일 및 말일까지 처리장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분뇨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청소 대행업자
2. 그 밖에 시장이 처리장을 사용하도록 인정한 자

② 생략

구미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

- 가. 공공처리시설의 관리·운영은 시장이 한다. 다만, 공공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안 제3조제1항)
- 나. 시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공공처리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안 제3조제2항)

2. 비용추계의 전제

- 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운영비 산정은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대행지침(환경부,2018.10.23)”의 공공하수도시설 관리대행대가 산정 기준을 준용한다.
- 나. 구미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준공이 2020년 6월 예정이므로 추계 기간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으로 한다.

3. 비용추계의 결과 : 위탁하여 관리·운영할 경우 2020년 2,030,259천원을 포함하여 2024년까지 10,778,921천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단위:천원)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구분							
세입	○ 사용료(a)	1,890,000	1,890,000	1,890,000	1,890,000	1,890,000	9,450,000
세출	○ 운영비(b)	2,030,259	2,091,167	2,153,902	2,218,519	2,285,074	10,778,921
□ 총 비용(a-b)							

☞ 세입(사용료)의 경우 45,000원/m³ * 150m³/일 * 280일 적용

☞ 세출(운영비)의 경우 1차년도 이후 매년 인상률 3% 반영

4. 재원조달 방안

(단위:천 원)

구분 \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국 비						
도 비						
시 비	1,906,972	1,964,181	2,023,107	2,083,800	2,146,313	10,124,374
민 간						
기 타 (낙동강수계기금)	123,287	126,986	130,795	134,719	138,761	654,547
합 계	2,030,259	2,091,167	2,153,902	2,218,519	2,285,074	10,778,921

※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낙동강유역환경청의 낙동강수계관리기금으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운영비 일부 지원받음

5. 부대의견 : 없음

6. 작성자

작성자 이름	환경보전과 김태오
연 락 처	(054)480-5284

소관 실·과		환경보전과
입 안 자	과 장	우 준 수
	담 당	엄 승 진
	담 당 자	김 태 오 (480-5284)